

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

(홍성룡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3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5일

발 의 자 : 홍성룡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우, 김제리, 김태수,
김희걸, 박기열, 박상구,
박순규, 송도호, 송명화,
송아량, 송정빈, 양민규,
이영실, 장상기, 장인홍,
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
최웅식, 황규복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「병역법」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,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은 물론,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입영”에 대해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입영지원금 지급 방법 및 대상, 신청·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~안 제5조)
- 다. 입영지원금의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병역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과 동시에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입영”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(徵集)·소집(召集) 또는 지원(志願)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입영지원금 지급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4조의 지급 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.

② 입영지원금은 10만 원 이내의 서울특별시 지역화폐로 한다.

제4조(지급대상)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입영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(현역, 보충역)로 한다. 단, 장교, 부사관은 제외한다.

제5조(신청 및 지급)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.

③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환수조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1042900000002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홍성룡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백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1. 04. 29.

회신일 : 2021. 05. 12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3조(입영지원금 지급)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3조(입영지원금 지급)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비용

나. 전제

- 현역병 수와 보충역 수, 19~25세 남성인구 수는 통계청 및 e-나라지표, KOSIS(국가통계포털) 자료를 참고
- 서울시 보충역 수는 「병역법」 제5조(병역의 종류) 제3호1)에 따라 가호와 나호로 구분하여 추계하되, 나호는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복지무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제하여 추계(다호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)
- 서울시 현역병의 수는 최근 5년간 서울청 현역병 수 증감률의 평균값(△4.1%)만큼 매년 감소한다고 가정
- 서울시 보충역 나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무원과 전문 및 산업요원 수는 최근 5년간 서울청 사회복지무원 수와 전문 및 산업요원 수의 증감률의 평균값(4.3%, 8.5%)만큼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

※ 최근 5년간 서울시 현역병, 사회복지무원, 전문 및 산업요원 입영(복무) 현황
(단위: 명, %)

연번	구분		2015	2016	2017	2018	2019	증감률 평균
1	현역병 수	계	44,785	42,544	38,964	37,399	37,860	△4.1
		징집	24,487	22,439	21,543	19,630	20,389	
		모집	20,298	20,105	17,421	17,769	17,471	
		(증감률)	-	(△5.0)	(△8.4)	(△4.0)	(1.2)	
2	보충역 (나호) 수	사회복지무원 수	10,309	10,958	12,313	12,396	12,121	4.3
		(증감률)	-	(6.3)	(12.4)	(0.7)	(△2.2)	
		전문 및 산업요원 수	4,173	4,491	4,973	5,452	5,773	8.5
		(증감률)	-	7.6	10.7	9.6	5.9	

자료: 현역병 입영현황(청별), 산업지원인력 업체관리자원 현황(청별), 사회복지무원 복무현황(청별) (국가통계포털)

1) 「병역법」 제5조(병역의 종류)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3. 보충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

- 1) 사회복지무원 2) 삭제 3) 예술/체육요원 4) 공중보건요원 5) 병역판정검사전담요원 6) 삭제 7) 공익법무관
- 8) 공중방역수의사 9) 전문연구요원 10) 산업기능요원

다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

- 보충역 가호에 해당하는 보충역 수는 최근 5년간 서울청 병역판정검사 수검 인원 대비 보충역 수의 평균 비율(13.1%)을 산출된 현역병 수에 적용하여 추계(병역판정검사 현황-보충역사유별, 청별(종합), 국가통계포털)
- 서울시 현역병 및 보충역 수 산출 시, 매년 서울시 19~25세 남성인구 감소율을 반영하여 추계
 - 서울시 19~25세 남성인구 감소율(△2.9%) : 최근 5년간 감소율의 평균(통계청)
- 입영지원금은 제4조(지급대상)에 따라 서울시 총전입이동률(16.6%)만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
 - ※ 제4조(지급대상)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입영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(현역, 보충역)로 한다. 단, 장교, 부사관은 제외한다.
 - ※ 서울 총전입 이동률(16.6%) : 2020.1~11월 서울시 총전입 이동률의 평균(통계청,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)
- 입영지원금은 100천원,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

다. 추계기간

- 5년(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≙ 23,765,900천원(연평균 4,753,18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 (2021)	2차년도 (2022)	3차년도 (2023)	4차년도 (2024)	5차년도 (2025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입영지원금 (제3조)	4,805,800	4,768,100	4,741,600	4,726,800	4,723,600	23,765,900
	소계(b)	4,805,800	4,768,100	4,741,600	4,726,800	4,723,600	23,765,900
□ 총 비용(b-a)		4,805,800	4,768,100	4,741,600	4,726,800	4,723,600	23,765,90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
담 당 관
사업평가팀장
주 무 관

예산정책담당관

조도형

이정수

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

※ 서울시 전입자 추계

(단위 : 명)

구 분	1차년도 (2021)	2차년도 (2022)	3차년도 (2023)	4차년도 (2024)	5차년도 (2025)
서울시 전입자	9,565	9,490	9,438	9,408	9,402

주: 입영대상자 수에 서울 총전입 이동률(16.6%) 적용